의안번호 제1467호

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 **검 토 보 고 서**

1. 의안제출

가. 제출일자 : 2018. 8. 23.(목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예비심사 : 2018. 9. 11.(화)

라. 회 부 일 : 2018. 9. 17.(월)

마. 심 사 일 : 2018. 9. 19.(수)

2. 제안사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8조 및「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운영기금 운용 관리 조례」제11조에 따라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서를 심의·의결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O 조성 총괄

(단위: 원)

				, _ ,
전년도말 조성액(가)	당해연도 증감액			당해연도말
	계(나)=(다)-(라)	조성액(다)	사용액(라)	조성액 (마)=(가)+(나)
315,436,007	3,713,340	47,849,740	44,136,400	319,149,347

4. 근거법규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
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운영기금 운용 관리 조례」제11조

5. 검토의견 : 없음

관 련 법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(약칭: 지방기금법)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 행정안전부(재정정책과)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 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흉기금 운용 관리 조례

[시행 2017.4.10.] [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859호, 2017.4.10., 일부개정] 중구 (환경위생과)

제11조(기금결산)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